

大田 學生 教育院 設置 및 運營 條例案 審 查 報 告

1992年 7月 28 日
文教・社會委員會

1. 審查經過

가. 提案日字 및 提案者 : 1992年 7月 9日, 大田直轄市 教育監

나. 回附日字 : 1992年 7月 13日

다. 上程日字 : 第12回 大田直轄市 議會 (臨時會)

第3次 文教・社會委員會 (1992. 7. 23)

上程, 審查, 議決

2. 提案說明의 要旨 (提案說明者 : 中等教育局長)

가. 提案理由

學生의 精神教育과 心身修練으로 學校教育過程을 補完하므로써
進取的이고 未來志向의인 人間을 教育하기 위하여 大田學生教育
院(以下 “教育院”라 한다)을 設置하고 이에 따른 諸般 事項을 定
하려는 것임

나. 主要骨子

- (1) 設置目的을 定함 (案 第1條)
- (2) 位置를 忠淸南道 公州郡 反浦面 鳳谷里 山 61-2번지로 定함.
(案 第2條)
- (3) 教育院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定함. (案 第3條)
 - 가) 學生修練
 - 나) 教育監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修練과 研修
- (4) 組織 및 定員에 關한 事項을 定함, (案 第4條 및 第5條)
 - 가) 教育院에 教育院長을 두되 教育院長은 奬學官으로 보하도록 함.
 - 나) 教育院長밑에 1課 3部를 둠
 - 다) 教育院의 事務分掌과 定員에 關한 事項은 教育規則으로 定하도록 함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: 金鎮鎬)

- 本 條例案은 大田 學生 教育院을 設置 運營하여 學生들의 精神 教育과 心身修練의場으로 活用코자 하는 것으로써 地方教育自治에 關한 法律 第41條에 根據하고 있음,
- 本 條例案의 主要內容으로는
첫째, 本 學生 教育院의 設置目的, 位置等을 案 第1, 2條에서 規定하고 있는바, 位置를 忠淸南道 公州郡 反浦面으로하여 大田直轄市 外 地域으로 하였음은 敷地 確保에 따른 豫算 節減 效果와 周邊 景觀等을 考慮한 것으로써 學生들의 教育效果 增大에도 寄與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됨.

둘째, 本 學生 教育院의 所管 業務로써 學生修練과 其他 教育監
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教育等을 擔當하게 되는데 주로 幹部
學生에 대한 指導力 培養 教育, 學校生活 不適應 學生에 대한
自我發見教育, 卒業班 學生에 대한 進路教育, 其他 基本 生活
習慣等을 指導하므로써 學生 本然의 姿勢를 確立하는 데 많은
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됨.

셋째, 本 學生教育院의 組織과 定員을 定하려는 것으로써 案 第4條
와 5條에 規定하고 있는 바,

院長은 奬學官으로 보하며 院長 奉下에 庶務課, 學生部, 研修
部 및 教導部等 一課 3部를 두도록 하였으며, 이의 構成에 必
要한 公務員의 職級과定員은 教育規則으로 定하도록 委任하고 있
음.

그러나 本 教育院의 定員에 대하여는 教育計劃, 收容能力, 他
市·道 教育院의 定員等을 綿密히 檢討한 후, 適定 人員을 配
置하므로써 豫算을 浪費하는 事例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
思料됨 .

넷째, 本 學生 教育院의 財政 運營에 관한 事項은 案 第6條와 7條
에 規定하고 있는 바,

本 教育院에 所要되는 諸 經費는 大田直轄市 教育費 特別會計
및 修練生 委託機關의 負擔金을 充當토록 하였으며, 利用하는
學生들에게 修練에 따른 實 經費를 徵收할 수 있도록 하고 그
限度額을 規定하고 있음.

실제로 本 條例로 規定한 修練生의 修練經費는 4박5日 基準으로 約22,600원이 算出되어 教育 效果等과 비춰볼 때 큰 無理는 아닌것으로 思料됨.

다만 좀 더 많은 學生들이 아무 負擔없이 本 教育院을 利用하기 위하여는 無料 教育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 바, 年次的으로 基金 造成等의 方案을 講究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됨.

以上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

本 條例案은 學校 教育 過程에서 不足한 部分에 대하여 共同 生活의 經驗等 그 補完 教育을 實施하므로써 進取的이고 未來 志向의 人間의 育成이라는 目的아래 設立코자 하는 大田 學生 教育院의 設置 및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려는 것인 바, 92年 1月 11日 本 教育院 設置에 따른 教育部 承認 等 諸般 法的 事前 節次를 得한 事項으로써 별다른 問題는 없을 것으로 思料됨.

4. 質疑 및 答辯 要旨

李鍾奎 議員) 設立도 重要하지만 管理는 더욱 重要하다. 管理에 徹底를 기하기 바라며, 附帶施設(식당, 매점등)의 運營은 어떻게 하는지?

答 辯) 全部 直營으로 運營함.

5. 討論要旨: 없음

6. 小委員會 審查報告 要旨 : 없 음

7. 少數 意見 聽取 : 없 음

8. 審查結果 : 原案대로 可決함.

9. 體系 字句 審查 內容 : 없 음

10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